

#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3. 21-----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2. 3. 21
- 다. 상 정 일 자 : 제100회 사하구의회(임사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 4. 4)원안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지침」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구 공무원 총정원수 645명을 664명으로 하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으로 함

## 3.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조(정원의 총수)
-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이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2002. 2. 5)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총645명을 664명으로 19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 한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 호대상자, 모자·보육가정, 장애인등 보호대상자의 증가와 저소득가 구 자활 지원 등 업무량 증가로 복지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 노인의 여가활동, 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등 복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하여 1인당 100세대이내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부의 배치기준에 따라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사결과 : 원안의결